**‘ CLEAR 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**본 동아리의 명칭은 CLEAR라 칭한다.**

**제 2조 [목적]**

**CLEAR를 통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배드민턴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쌓고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활동을 하는데 있다.**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**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**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**1.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운동부장, 홍보부장으로 정의한다.**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**전년도 임원진 추천 제도로 선출한다.**

**제 3조 [임원진]**

**회장은 동아리 내 회원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.**

**부회장은 회장의 역할을 보조한다.**

**총무는 동아리비 납부 및 관리를 수행한다.**

**홍보부장은 SNS 관리, 동아리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.**

**운동부장은 운동 레슨 및 운동 인원 수요조사를 수행한다.**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**1.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**

**2. 회원은 회비 및 각종 행사 시 결정된 행사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**

**3. 운영진의 업무 활동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.**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**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의 선출에 따른다.**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**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**

**제 4장 동아리방 이용수칙**

**개인 단위로 동아리방 이용을 해야 할 경우 임원진에게 연락 후 승인 받고 2시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.**

**(공지방에 얘기를 해야 한다. )**

**동아리방은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.**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**정기모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한다.**

**제 2조 [총회]**

**매 학기 개강과 종강시 총회를 진행한다.**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**(정기회비) 정회원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**

**(보조회비) 필요시 임원진의 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금액을 거둘 수 있다. (예 : 동아리 단체 티셔츠 제작비용)**

**제 2조 [회비]**

**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**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**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**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**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**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**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**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**1. 본 동아리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가 들어왔을 때 회의를 거치 후 개정한다.**

**제 3조 [징계]**

**동아리의 회칙을 위반할 시에는 징계를 취할 수 있으며, 위 징계처벌은 임원진 회의 내에서 결정한다.**

**징계 중 제명의 기준은**

**-동아리 회칙을 위반한 자**

**-동아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**

**-동아리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한 자**

**-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은자**

**-동아리 내 분란을 일으킨 자**

**제 4조 [재가입]**

**1. 동아리 활동 중 제명 또는 탈퇴한 경우에 추후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재가입을 원할 경우**

**회장 혹은 운영진 결정에 의해 재가입이 가능하다.**

**2. 동아리 들어오기를 희망했다가 갑자기 취소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이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.**

**3. 휴학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잠시 중단한 경우 추후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재가입을 원할 경우**

**회장 혹은 운영진 결정에 의해 재활동이 가능하다.**

**제 5조 [탄핵]**

**1. 회장 혹은 운영진의 직무가 태만하거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회칙에 위배하는 경우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.**

**2. 정희원의 2/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**

**3. 탄핵결정은 그 직우로부터 파면함이 원칙이다.**